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5월 06일 01시 09분





##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농장주, 영업주 운영신고서 등 제출 안내

2024.04.25 조회수 66 등록자 황소이

###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

1. 근거: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(농식품부 고시 제2024-14호)

2. 목적: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·폐업 지원

\* 제10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신고·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·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

3. 제출 대상: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,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\*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\*\*

\*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·처리하거나,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(개식용 종식법 제2조제3호)

\*\*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·가공하여 판매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(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)

4. 제출 기간: (신고) '24. 2. 6. ~ 5. 7. / (이행계획서) '24. 2. 6 ~ 8. 5.

### 5. 제출 내용

- (신고)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운영신고서(별지 제1호~제3호 서식),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\*

\*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

(증빙자료 : 거래 장부 등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, 서류, 기록 최대한 제출)

- (이행계획서)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\*

\*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('24.8 예정) 후 6개월 이내에 수정, 보완하여 제출 가능

### 6. 접수처

- (개사육 농장주)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(061-270-8465)

- (개식용 도축, 유통업)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(061-270-8472)

- (개식용 식품접객업)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(061-270-8948, 8942)

- (개를 원료로 하는 식품 유통업)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(061-270-8948, 8942)

### 7. 접수 절차 :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

- (신고) 작성 및 제출(신고인) → 서류 및 현장조사(시군) → 신고확인증 발급

- (이행계획서) 작성 및 제출(신고인) → 검토 및 수리(시군) → 이행 점검(시군)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(개식용).hwp (28 hit / 72.7 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  
「2024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·육성 지원」 가·

다음글  
[AI 메타버스센터] '인공지능 융합서비스 개발자·

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